공공 공간에 대한 사적 개입과 전환*

- 도쿄 공공 공원의 사유화와 공원 홈리스의
공간 실천을 중심으로 -

신지은** · 조정민***

〈차 례〉

1. 서론
2. '공공성'에 대한 공간적 접근
3. 공공 공원에서 공/사의 충돌
   1) 공공성의 사유화와 정상화
   2) 홈리스들의 공공 공간 전유
4. '소수자 공간'으로서의 고미니티
   1) 쓰레기 공동체: 가장 공공적인 공동체
   2) 공공성의 경계, 공공 공간의 안과 밖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공공 공간을 '도시에 대한 권리', '거주권', '공공성' 등의 개념을 통해 재고한 것이다. 공공 공간을 규정하는 공공성의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 제1저자.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제2저자.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논리는 ‘정상 시민’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수자적 가치들을 무시하고, 또한 소수자의 욕망이 공적으로 표출될 수 없도록 만든다. 소수자란 단지 소수의 이해 집단일 뿐, 이들이 주장하는 자율성은 공공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배제와 추방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실체로서의 공공성은 부분적이나마 집단의 폐쇄적인 공공성을 가정하고 소수자를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홈리스들의 소수자적 욕망이 근대의 다수자적 공공성을 재편 혹은 확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국면을 도쿄의 공공공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간적 실천은 국민국가와 정상 사회 개념에 바탕을 둔 근대 사회질서 구조뿐만 아니라 근대의 가치와 상식에 관해서도 전면적인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주제어: 공공 공간, 공원, 공공성, 홈리스, 거주권, 다중, 공동체

1. 서 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홈리스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홈리스는 흔히 일용노동자 문제 등 사회 내부적 모순에 따른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다가, 점차 전지구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와 세계적 불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 정부는 도시문제로서의 홈리스 문제를 민간단체의 쉼터 마련, 시설물 건축, 급식 원조 등의 대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홈리스 문제는 다양한 입장들 예컨대 계급 문제, 실업 문제, 가족의 붕괴 등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도시에 대한 권리’, ‘거주권’, ‘공공성/공공 공간’이라는 개념들

을 재사유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홈리스 문제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지 않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연구는 홈리스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홈리스들이 '정주'하는 '공공 공간'의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성'과 '공공성', '도시'와 '시민',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 '권리', '인권' 등의 문제를 공간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공공성'이 소수자를 감시하고 배제하는 '다수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성'이 사유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 이 개념이 가져오는 다양한 혼란을 보여줌으로써 공공성 개념을 재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공공성'에 대한 공간적 접근

우리가 공공성을 사회구성의 포괄적 질서라고 볼 때 공공성 개념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복합적인 의미를 구성한다. 공공성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는데, 신정완은 공중의 시선에 대한 개방성,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기본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비시장적 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강화, 국민적 자산과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한 국민적 통제 등을 공공성이 함의하는 다섯 요소로 강조한다.[1] 조대엽은 세 가지 수준에서 구성요소를 찾고 있다. 즉 주체와 가치의 차원에서 공민성, 제도와 규범의 차원에서 공익성, 행위의 차원에서

1) 신정완,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시민과 세계』 11, 참여연대, 2007, pp. 40-53.

공개성의 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공공성 개념을 더욱 복합적이고 다의적인 형태로 이해하고자 했다. 첫째, 주체와 가치의 차원에서 '공민성'의 요소이다. '공공'을 의미하는 public의 라틴어 기원인 poblicus는 populus에서 파생된 말이고, populus는 영어 people의 어원이다. 공공성 개념은 그 어원을 따져보았을 때, 이미 '인민'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후기 근대의 정치질서에서 공공성의 주체는 따라서 국민이라기보다는 '시민'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둘째, 공공성은 제도와 규범의 차원에서 '공익성'을 내재하고 있다. 인간 삶의 근저는 경제적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공익성은 공동체적 삶에 필수적인 이 경제적 요소 즉 경제적 가치 혹은 효용적 편익설비에 관한 것이다. 이런 편익설비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존의 기초 자원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성은 행위의 차원에서 '공개성'의 요소를 포함한다. 사적인 것이 특정한 소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데 반해 모든 이에게 접근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 공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성 개념에서 공론성(publicity) 요소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는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sphere) 이론의 핵심적 내용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 및 접근이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올바르다 등의 '공정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2)]

사실 공공성이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따라서 역사와 사회에 따라 그 함의가 달라지는 개념이다. 위에서 설명한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현대의 공공성의 의미는 근대의 부르주아 시민사회와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계승하는

2) 조대엽,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 『한국사회』 13-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2, pp. 9-10.

역사적 형성물이다. 왕조시대에는 국왕 개인을 정점으로 하는 절대적 공공성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근대 국민국가 시대에는 국민적 주체의 국가공공성이 형성되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역사의 구조사적 맥락에서 공공성은 달리 형성될 수 있고, 역사의 국면이 변동함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공공성은 시대정신을 반영한다.[3] 당대의 바람직한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은 역사적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가치적'으로도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공공성 개념에는 민주주의, 평등, 정의, 참여 등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4]

이와 같이 공공성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이 공공성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을 대상으로, 어떤 정체성과 욕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가, 우리 시대의 공공성의 구체적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 현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공공성은 또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의 문제를 공간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공공성이 많은 경우 소수자를 배제하는 폐쇄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이 쉽게 드러난다. 근대의 시민사회가 생산해 내는 공간은 다수자의 공간으로, 이는 소위 보편적, 중립적, 합리적, 이성적인 것으로 상상되는 공적 공간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수자들의 일상적/비일상적 실천은 근대 시민사회가 가정하는 공적 공간에서 배제, 분리된 사적 공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길 강요받는다.[5]

---

3) 백완기, 윤수재 외 편저, 「공공성 논의의 필요성」,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2008, p. 20.

4) 조대엽,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 『한국사회』 13-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2, p. 17.

5) 박경환, 「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4,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8, p. 304.

페인스타인(Fainstein)이 주장했듯이, 진보적 개혁의 가치를 포기할 때 도시 계획은 부르주아적 도시를 좋은 도시라고 선전하는 기업가적 사고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기업가적 사고에서 볼 때 좋은 도시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청결함, 질서, 새로움, 성장, 대형건물, 쾌적성, 치장된 주거단지 등의 이미지를 함축한다. 여기에서 소외계층의 이해는 배제되거나 은폐되기 쉽고, 빈곤한 주민들에게 적합한 주거 시설에 대한 관심의 여지는 거의 없다.[6] 부가 도시 공간 내에서 배치되면서, 부자들은 빈민이나 주변인들과 분리된 곳에 거주하고, 높은 담장을 쌓아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프라이버토피아(privatopias)' 및 '문이 있는(gated) 공동체'를 형성한다. 부자들이 만드는 그들만의 유토피아는 시민권, 사회적 소속감, 그리고 상호부조, 공공성 등의 개념을 훼손시키고 있다.[7] 현대의 수많은 도시계획 모형들 예컨대 신도시주의, 도시디자인론, 스마트성장론 등은 대부분 이러한 기업가적 사고로 무장한 도시계획으로, 사회적 배제와 주체의 정책적 활동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8]

이렇게 볼 때 공공성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공공 공간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 및 공적 공간 개념은 특수한 주체들을 선험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

---

6) 조철주, 「탈근대적 계획환경 정합적 계획을 위한 근대계획의 재구성」, 『도시 행정 학보』 22-3,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p. 359.

7) 데이비드 하비 지음, 최병두 옮김, 『희망의 공간』, 한울, 2009, pp. 209-210.

8) 최병두,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공간과 사회』 37,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pp. 20-21. 물론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이윤창출을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이런 경향에 반대하여, 도시를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적 공동체적 삶이 영위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한 편에 존재한다. 이런 시도와 노력은 예컨대 민주주의가 도시의 사회공간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동체 복원 정책이나 도시 정체성 형성, 공적 공간의 구축 정책 등을 제시한다.

히 명시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들의 일반적인 사용을 좀 더 비판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이 용어의 내용을 새로 구축할 필요가 요청된다.

사실 이미 르페브르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현대의 공적 공간은 사적 공간에 비해 자본에 의한 지배가 더 많이 관철되는 공간이다.[9] 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은 언제나 관료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고, 심지어 특정인의 사적 공간으로 전환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적 공간 그 자체가 곧바로 해방의 공간은 전혀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시공동체 구축과 공적 공간 활성화는 물적 공간을 구축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마디로 공공 공간은 투쟁의 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적 공간의 민주화를 요청할 권리,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도시 공간 속에서 소수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소수자 공간')을 요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민(권) 혹은 공공성에 토대를 둔 공적 공간을 좀 더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들에 곧바로 답하기 보다는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공공 공원'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들이 제기하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구체적으로 서울광장을 예로 들어 보자. 서울광장은 공적 공간인가 사적 공간인가? 일견 너무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서울광장에 사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데 이어, 광화문 광장, 청계천 광장 등이 신고제로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서울광장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공적 공간, 즉 모든 이의 것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광장이 서울시의

9) 곽노완,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p. 207에서 재인용.

소유이며,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장이 이 광장의 사용과 처분권에 대한 최종 인가권을 갖고 있다면, 이 광장을 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공과 사의 구별이 상식으로 통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 두 영역의 경계는 대단히 유동적이다. 사생활의 보호와 공중의 알 권리가 충돌하고, 간통죄에 대한 법률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실은 공과 사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가운데 하나이다. 여러 복잡한 논의들이 있지만, 보통 공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 있다(가시성)는 점,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개방되어 있다(개방성)는 점, 부분이 아닌 전체(집단성)라는 특징을 가진다.[10]

이 구분은 공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나눌 때도 이러한 특징들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흔히 도시 연구 분야에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공공 관청에 의해 관리되거나 공동체의 모든 성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해 공유되는가 아니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소유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가에 따라 구분한다. 그런데 이런 구분들 속에서 공공 공간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사실 우리는 공공 공간이라고 할 때, 흔히 공원이나 광장 등을 떠올리지만, 또한 쇼핑몰, 놀이공원 등을 떠올릴 수도 있다. 이처럼 공공 공간이란, 상업적 공공 공간(commercial public space),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건물(publicitly used building),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privately owned public space) 등까지도 포함한다.[11] 이처럼 공공 공간은 다양한 양상을 띠며 심지어 서로 상충하기도 하는 많은 요

10) 이승훈,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성찰: 공공 영역과 '시민됨'의 문화적 조건」, 『사회이론』 37,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p. 105.

11) 김민진·김광현, 「현대의 공공성이 드러나는 집합적 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9-1, 대한건축학회, 2009, pp. 480-481.

인들을 포괄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3. 공공 공원에서 공/사의 충돌

1) 공공성의 사유화와 정상화

공공 공간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그로 인한 충돌은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澁谷區)에 위치한 미야시타 공원(宮下公園)의 '나이키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야시타 공원은 JR야마노테선(山手線) 시부야 - 하라주쿠(原宿) 사이의 선로와 메이지 거리를 따라 만들어진 길쭉한 형태의 인공지반 옥상공원이다. 1968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실시된 시부야 하천 지하 배수로 공사와 함께 공원도 정비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에는 '도쿄 최초의 공중공원'으로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도쿄의 중심 번화가인 시부야 미야시타 공원에 홈리스들이 모여 텐트를 치고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당시의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와 소규모 은행의 도산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다. 직장을 잃은, 혹은 집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 공원 안팎에는 알루미늄 캔 수집, 잡지 판매 등의 자원 회수업, 노점, 경비, 청소 등의 일용직 도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홈리스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한 때 공원 거주자의 수는 130명에 이르기도 했는데, 이는 미야시타 공원이 일종의 거주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공원에 다시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경부터이다. 2008년 3월 10일, 시부야 구청 도시환경위원회는 주식

회사 나이키저팬(이하 나이키사)에 의한 미야시타 공원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때부터 미야시타 공원은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시부야구는 노후화된 공원의 수리, 보수, 정비를 위하여 공원의 재개발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시부야 구청은 공원의 명명권을 나이키사에 매각하고(연간 사용료 1700만 엔, 10년 계약), 또한 공원의 재개발 비용 전액을 나이키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나이키사는 공원의 명칭을 '미야시타 NIKE 파크'로 변경하고, 스케이트 보드장, 풋살구장, 인공 암벽장 등을 설치하여 유료 공원으로 운영할 방침을 발표한다.

시부야 구청과 나이키사가 주장하는 공원 재개발의 이유는 노후화된 공원의 재정비와 안전한 스포츠 시설의 구비이다. 양자는 모두 공원의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공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공원의 홈리스 추방과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는 욕구가 전제되어 있다. 나이키사의 스케이트보드장, 인공 암벽 등반 시설물 건설 계획은 올림픽 경기의 정식종목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스케이트보드와 암벽등반 경기가 스포츠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부야 구청의 명명권 매각은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동시에 홈리스도 추방한다는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12]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야시타 공원의 재개발이 공공성과 공익을 주창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상적 시민(normal citizen)'의 모델에서 제외된 홈리스들을 배제하고, 또한 외형적 청결함과 편리함을 선전하는 기업가적 사고를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부야구의회 의원 이토 다케시(伊藤たけし)

12) 山本敦久, 「宮下公園ナイキ化計畵を問う」, 『comtempory sports critique』 22, 2010, p. 81.

는 홈리스를 추방하는 것이 공원 정비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13] 이 점에 주목하면서 현대의 공공성 개념을 살펴본다면, 이 개념을 채우고 있는 실체는 일반적으로 다수자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정상적 시민'의 모델에 의해 소수자적 가치들은 무시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공공성의 대상이 되는 혹은 공공성의 주체가 되는 공민(시민)은 보통 '전형적인 정상적 시민',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다수자'로[14], 여기서는 소수자의 욕망과 관련한 것들이 표출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공공성이란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고, 따라서 소수자는 여기에서 차별되고 배제된다. 왜냐하면 소수자란 단지 소수의 이해집단일 뿐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자율성은 공공의 가치(즉 다수자의 가치, 정상성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성은 흔히 이기주의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것과 대척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실체로서의 공공성은 (부분적이나마) 집단의 폐쇄적인 공공성을 가정하고 따라서 소수자를 배제하는 원흉이 되기도 한다. 특히 특정한 주체를 공공성과 동일시할 경우, 그 밖의 다른 주체들을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공공성을 증진시키지는 않는데, 님비(NIMBY) 현상이나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에 찬성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15]

이처럼 공공성의 대상이나 주체는 '전형적인 정상 시민',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다수자'로,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소수자는

---

13) 戸叶トシ夫, 「封鎖された公共圏　宮下公園2008-2010」, 『インパクション』 177, p. 8.

14) 윌 킴리카 지음, 장동진 외 옮김,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8, p. 455; 최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2004.

15) 이승훈, 「계급과 공공성. 공공성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와 사회』 88, 비판사회학회, 2010, p. 17.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기 쉽다. 미야시타 공원에서 거주하거나 야숙하는 자들은 정상이 아님은 물론, 정상 시민(특히 여성과 어린이)을 위협하는 존재이기에 이들은 추방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정상의 다수가 질서 정연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비용을 지불하며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려는 '미야시타 NIKE 파크' 사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기업에 의해 유료화 된 공원의 안과 밖은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지고, 스포츠 장비를 구비한 자와 구비하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며, 이용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진다. 공원의 펜스는 이렇게 공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고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있다. 부적절한 사람을 축출하고 부적합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2011년 4월 30일에 공개된 미야시타 공원은 2012년도 굿 디자인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16)

공공 공원의 사유화 및 홈리스 추방 등에 대한 기나긴 항의와 비판을 거쳐 공원의 명칭은 지켜내기는 했으나, 홈리스들은 마침내 공원을 떠나야 했다. 공원 내에 거주하던 홈리스에 대한 지원과 수용 정책은 이들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 채 일단락되었다. 시부야 구청 공원과(公園課)는 미야시타 공원에 인접한 곳에 임시 가건물을 마련하여 홈리스의 이동을 촉구하였는데, 이때 이동의 대상은 미야시타 공원 '내'에서 천막, 판자 등을 치고 거주하던 사람에 국한되었다. 공원 밖에서 노숙하는 자나 공원 밖에 텐트, 판자 집을 가지고 있는 자, 공원 내에 거주하는 자라 하더라도 일정

16) '굿 디자인상'은 1957년에 일본 통산성이 만든 G(Good)마크를 제도화한 것으로, 1998년부터 민영화 되어 "우리들의 삶과 산업, 그리고 사회 전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좋은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다. 개보수된 미야시타 공원은 굿 디자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이는 나이키사에 의한 공원 개발을 합리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기간 그곳에서 살며 거주 형태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시부야 구청의 홈리스 지원은 나이키사가 공원 개보수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에 불과했다. 당사자의 의견과 의지에 상관이 없이 일정 시설을 정비하여 이들을 반강제적으로 입소시킨 결과, 미야시타 공원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다수는 임시 가설 건물로 이동하거나 인접 지역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거나 혹은 거부당한 자들은 공원 밖의 도로, 거리 등에 텐트나 판자 집을 만들어 정주화, 정착화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텐트나 판자 집 없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자도 있다.



사진1. 미야시타 공원에서 추방되어 거리에서 노숙하게 된 홈리스들의 짐. 이로써 '비정상적 시민'은 공공 공간에서 더욱 분명하게 노출된다.



사진2. 요요기 공원 입구에서 한참 들어가야 블루 텐트촌을 볼 수 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원 내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삶터는 더 많은 '다수 정상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리로 이전되어 더욱 심각한 '비정상화'를 초래하고, 공공성을 위협하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비정상적 시민'이 한층 분명하게 노출된 셈이다(<사진 1>). 사실 홈리스에 대한 정부 정책은 대부분 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수용하려는 것인데, 이 수용이란 실상 그들을 공공 공간으로부터 '은폐'시켜 눈에 띄지 않

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원에서 추방된 이들이 시설로 들어가 눈에 띠지 않게 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금 거리에 남음으로써 이들의 존재가 공공 공간에서 가시화 된다면, 이는 결국 또 한 번의(어쩌면 여러 번의) 추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엥겔스가 말했듯, 부르주아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은 이 문제들을 다른 곳에 옮기라는 주장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7]

미야시타 공원이 2012년도 굿 디자인상을 수상하였을 때, 이 공원은 공원 시설의 개보수에 관과 민이 협력한 사회적 실험으로 평가되었다. 경직된 공과 사의 제도적 경계를 유동시키고, 공공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돌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공원 프로젝트(일명 나이키화)의 성과라는 것이다.[18]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공과 사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진 공공 공간으로 탄생하는가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공원의 공공성에 개입할 수 있는 '사'는 공원 거주자인 홈리스가 아닌 특정 사기업이라는 점이다. 기획된 공간 안에 홈리스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메이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고층빌딩과 네온사인이 현란하며 다른 한쪽에는 미야시타 공원에서 내쫓긴 홈리스의 임시 거처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지금도 여전히 미야시타 공원 주변은 공간의 민주화를 되묻는 투쟁의 장이다.

2) 홈리스들의 공공 공간 전유

홈리스란 말 그대로 주거를 상실한 사람이다. 주거란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피로를 해소하고

17) 데이비드 하비, 『희망의 공간』, 한울, 2007, p. 212.

18) GOOD DESIGN AWARD
http://www.g-mark.org/award/describe/39393

건강을 지속하게 해 주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장이다. 주거는 보통 가족 내지 친밀관계가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들은 사적 공간을 갖지 못한 채 모든 생활을 공공 공간에서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9]

공공 공간에서 주로 생활하는 홈리스들은 매번 "시민을 위한 공간"인 '공공 공간'에서 쫓겨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제와 추방에 동원되는 논리가 바로 공공성 개념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 개념은 '정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서울 시민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들이 홈리스가 되는 순간 모든 기초적인 권리를 상실한다. 이들은 국민도, 시민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주소지가 없는 이들의 경우 투표의 권리까지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구속사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주거부정의 경우' 구속할 수 있다. 심지어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20] 이런 상황을 주지할 때 홈리스 문제는 단순히 계층의 문제나 빈곤, 실업 등의 사회 문제로 접근해서 해석해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홈리스를 전적인 타자이자 절대적 소수자로 접근하고, 공공성과 인권 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해결책에 접근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다시 공간의 문제로 돌아와서 홈리스 추방 문제가 내포하는 공공성 개념을 살펴보자. 공공 공원에서 주거 허용 및 공공 공간에

19) 물론 노숙인 쉼터나 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거리와 시설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20) 형사소송법 70 · 201조.

서 홈리스들의 '주거권' 등은 대단히 첨예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곧장 대답하기 보다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서, 홈리스들에게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논리로 작용했던 공공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다시 살펴봄으로써 우회적으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1968)[21]를 출간한 이래, '도시에 대한 권리'는 현대 자본주의적인 도시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들에 주목하고, 대안적인 도시 공동체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지침이 되고 있다.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하는 핵심적 주제는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향유할 권리, 도시의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 등이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작품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 ② 도시공간을 도시거주자들 모두를 위한 사용가치를 최대화할 공간으로 보는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 ③ 도시생활을 변혁하고 부활시키는 권리로서 참여의 권리, ④ 자본의 동질화된 공간에 맞서 차별적인 공간을 생산할 권리, ⑤ 정보의 권리, ⑥ 시민권을 넘어서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시거주자의 권리, ⑦ 도시중심부에 대한 권리, ⑧ 거주생활의 권리(단순히 거주공간에 대한 권리를 넘어서서, 도시에서의 삶 자체를 작품으로 만들 권리 내지 혁신된 도시생활의 권리)[22] 등이다.

르페브르의 논의 외에도 도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데이비드 하비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 가슴 속의 희망을 좇아 도시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자신을 변

---

21) Henri Lefebvre, *Le droit à la ville*, 3e édition, Economica, Anthropos, 2009.

22) 곽노완,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2011, p. 203;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32, 한국공간환경학회지, 2009, pp. 42-90.

화시킬 권리"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도시의 변화는 도시화 과정을 지배하는 집합적 권력의 작동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도시에 대한 권리는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공동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하비가 보기에 우리 자신과 도시를 (재)창조하는 자유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시되었던 인권이다.[23] 이상의 논의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도시에 대한 권리의 핵심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배제 당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도시공간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며, 새로운 도시적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공동의 권리를 가지는 데 있다.

그렇다면 '도시에 대한 권리'를 홈리스의 경우, 특히 공공 공간에서 추방되는 홈리스의 경우에 적용시켜 본다면 어떤 논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홈리스들이 공공 공간을 '전유'하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 공간은 여타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진 교환가치에 주목된다. 하지만 홈리스들은 공공 공간 혹은 도시 공간 전체를 사용 가치로 바라본다. 이 때 '전유'란 소유권 개념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신체, 욕망, 시공간을 스스로 장악하여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공공 공간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마치 제 것(제 집)인 양 사용하는(거주하는) 홈리스들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홈리스들이 공공 공간을 자기 소유로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홈리스들이 집단적으로 공공 공간에서 거주하는 일본 도쿄의 요요기 공원(代々木公園)[24]의 경우, 이 거주 공간(블루텐트)은 사적인 공간인

---

23) David Harvey,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3, 2008, p. 23;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p. 42에서 재인용.

24) 도쿄 하라주쿠(原宿)에 인접한 대규모 공원으로, 공원 안쪽 한편에는 푸

가, 공적인 공간인가? 이 모호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적인(private) 것과 인신적인(personal)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인신적인 공간'이란 개인이나 친밀집단이 인신적인 안정, 휴식, 사색, 인식적인 욕망의 향유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닫힌 공간이다. 곽노완[25]은 마르크스가 '사유 재산'과 '인신적인 재산'을 구분했던 것을 따라, '사적 공간'과는 다른 '인신적인 공간' 개념을 제기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에서 토지와 생산수단은 공동소유로 전환되어 이에 대한 사유재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것이 곧 개인재산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토지와 생산수단을 제외한 소비재의 일부는 여전히 개인재산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대안 사회에서 모든 공간이 공동 공간 내지 공유 공간이 된다고 해도 사유 공간만 폐기될 뿐 인신적인 공간은 소멸되지 않는다. 즉 어떤 공간이 공유화되더라도 이곳에 거주하는 개인의 고유한 사용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공공 공간인 공원에서 거주하는 홈리스들은 텐트와 벤치를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공공 공간을 자기 소유의 사적 공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신적인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지배받는 공공 공간은 전유된

른색 천막으로 텐트를 만들어 홈리스들이 거주하는 "블루텐트 촌(ブルーテント村)"이 자리하고 있다. 텐트 수와 거주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00년대 초반에는 300-400명 가량이 거주했다고 한다. 거주자의 대부분은 중년, 노년의 독신 남성이지만, 여성, 청년, 외국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는 10년, 20년, 30년에 걸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도 있다. 2004년 도쿄도에 의한 '아파트 이행사업'에 의해 거주자들의 일부가 떠나기도 했다.(力道さん・山形さん・小川てつオ, 「ホームレスに歴史あり - 代々木公園テント村の歴史」, 『現代思想』 34-9, 2006, pp. 132-146.)

25) 곽노완,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11, pp. 207-210.

공간으로 변모된다. 이런 점에서 지배받는 것과 전유된 것, 지배받는 공간과 전유된 공간은 늘 함께 붙어 다닌다는 르페브르[26]의 분석은 적절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주소지가 없어 모든 권리에서 배제되는 홈리스들이 거리에 주소지를 가지게 된 사례는 대단히 흥미롭다. 시부야 역 근처와 요요기 공원 블루텐트 촌을 오가며 살고 있는 여성 홈리스 화가 이치무라 미사코(市村美佐子) 씨는 우편함을 만들고 우체국에 가서 주소를 등록했다고 한다. 실랑이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주소지로 우편물이 배달되고 있다. 주소는 "24번지 R246 철교 아래 서쪽 종이박스 로켓"이다.[27] 이 경우 공공 거리를 사유화했다고 보면서 비난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것은 길거리를 자기 소유의 집으로 사유화 했다기보다는, 인신 공간으로 전유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28]

---

26)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pp. 258-262.

27) 신지영, 「아름다운 피고들의 고미니티에 초대합니다! 이주 노동자 민우 씨와 홈리스의 <246키친>」, 『인문학 통신/일본에서 마을 만들기』, 2009. 10.30, www.greenbee.co.kr/blog/808.

28) 공공 공간 내에 위치한 홈리스의 거주 공간이 '인신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오사카시(大阪市) 기타구(北區) 오기마치 공원(扇町公園)을 둘러싼 한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노숙자 야마우치 유지(山內勇志) 씨는 여권 취득을 위해 주소지를 등록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수년간 오기마치 공원에 거주하며 우편물도 받아 온 야마우치 씨는 공원을 주소지로 신고하려 했으나 구청이 수리하지 않자 2005년 3월 16일 제소를 단행한다. 2006년 1월 27일, 오사카 지방 법원은 주소란 "객관적으로 생활의 본거지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야마우치 씨의 텐트는 이에 해당된다며 야마우치 씨의 주장을 전면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야마우치 씨는 오기마치 공원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주소지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 즉 객관적 거주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월 23일 오사카 고등 법원 공소심에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야마우치 씨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홈리스의 거주 공간이 인신 공간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新・「裁判官」がおかしい!(第4回)ホームレスに

4. '소수자 공간'으로서의 고미니티

홈리스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점에서 노숙자로 불리기도 하고,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점에서 부랑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흔히 사회의 낙오자, 사회에서 배제된 타자로서의 소수자로 이해되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홈리스는 소수자로 간주되는 다른 집단들, 예컨대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과 달리, 특별한 현상적 개념적 범위가 없다. 그리고 이들 소수자들의 소수자성 - 성, 민족, 인종, 계급 - 이 그다지 가변적이지 않음과 달리, 홈리스의 소수자성은 대단히 가변적이다.[29]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다수자) 중 누구나가 어느 날 갑자기 홈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서 이들은 오래 전부터 부랑자나 거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특수한 사람들'의 문제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IMF를 계기로 '보통 사람들'도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처럼 홈리스들은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다수자(보통 사람들)와 소수자(특수한 사람들)의 사이를 가장 쉽게 넘나들고, 그들이 가지는 내적 차이도 대단히 크고 많다. 이런 이유들은 이들이 하나의 정치적 집단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 요소로 작동한다.

우리는 이 장에서 물적 공공 공간인 공원에서 벌어지는 공간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공성과 시민성 간의 모순과 투쟁 등을 살펴보고자 하지만, 이것이 이러한 권리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오히려 탈정치화 되고 있는 도시 질서에 균열을 내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위협받고 추방당하는 이들, 결코 하나

「公園への住民登録」を認た超エリート裁判長」, 『週刊新潮』53(10), 2008, pp. 142-145.

29) 김준호,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공간과 사회』 36,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p. 42.